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79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업 태 영 의 원 대 표 발 의 (제 2201379 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 변경(안 제2조 및 제29조)	3

I. 업무영의원 대표발의(제220137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업무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4.

다. 회 부 일 : 2024. 7.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3. 검토의견

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 변경 (안 제2조 및 제 2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9.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공공기관----- -----. 3. ~ 9. (현행과 같음)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 <단서 삭제> ② 제1항-----이전하는-----이전을----- ----- -----

현행	개정안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 원칙을 혁신도시와 더불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입법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재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1차 이전 공공기관 150개 중 21개 기관임.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사례]

구 분	이전 완료기관
개별이전 (21건)	관세인재개발원('08.2, 천안), 경찰인재개발원('09.11, 아산), 국립특수교육원('10.11, 아산), 한국보건복지인재원('10.11,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11,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0.12, 오송), 질병관리청('10.12, 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11.3, 경주), 경찰수사연수원('13.7, 아산), 산림항공본부('13.11, 원주), 해양경찰교육원('13.11, 여수), 중앙119구조본부('14.11, 대구), 한국중부발전(주)('15.1, 보령), 한국서부발전(주)('15.8, 태안), 한국장학재단('15.11,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주)('16.3, 경주), 경찰대학('16.4, 아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8, 익산), 국방대학교('17.8, 논산), 한국국제교류재단('18.7, 제주)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¹⁾ 중으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갈등이 우려되므로, 이전공공기관의 이전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

1) * 2023년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공동성명서(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 촉구) 발표(1월, 7월), 2023년 비혁신도시 시군 공동성명서(인구소멸지역으로 이전 촉구) 발표(3월 13개, 5월 18개, 11월 35개 시·군)